

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
1. 사업명

-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-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- ※ 단,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

3. 신청대상

-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
- ※ 미등록 여성단체(시설)도 신청 가능. 단, 미등록 단체(시설)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
- ※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

※ 지원제외 단체
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,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세부내용
단독사업	.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연대사업	.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※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

6. 신청방법

- ① 접수기간 : **2014년 10월 17일(금) ~ 11월 7일(금)**
 - ※ 11월 7일,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
 - ※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
- ② 접수방법 : 온라인(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)과 우편 모두 접수
 - ※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
- ③ 접수처 : (121-841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
지원사업팀 김수현 앞
- ④ 제출서류

구분	세부내용
온라인 접수	<p>※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.</p> <p>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click</p> <p>② 이메일 서류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한 글파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첨부파일명 :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2_단체명.hwp ※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- 제출처 : 지원사업팀 김수현(free-hyune@hanmail.net)
우편 접수	<p>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</p> <p>②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 4부</p> <p>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사본 1부 ※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<p>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소정양식) 1부</p>

7. 신청 시 유의사항

-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 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 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 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 - 경상적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 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 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 등
 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 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외에 연대단체도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(※ 단, 시민사회단체는 제외)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시설, 쉼터, 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.
-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.
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.
-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.

8. 문의

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

TEL.02-336-6385 / E-mail. free-hyune@hanmail.net

9. 첨부

- ① [서식] 2015_성평등한사회만들기2_지원신청서
- ② [서식] 개인정보수집동의서